

2022년도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1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4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7건(안건번호 제2022-17619호~1842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7619호~17620호(순번 1번~2번)는 ♠♠♠ 카페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해당 링크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 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18425호(순번 807번)는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17621호~18424호(순번 3번~806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1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4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

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는 제2022-50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일시티' 등 3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32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심의 요약표와,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3쪽 이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과 2번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 '☆☆☆☆☆'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중인 사안임.

순번 1번과 2번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동일한 카페에 업로드 된 게시물로, 카페 메인 화면 및 설명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후 동아리 회원 인증 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게시물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2022. 4. 7. 기준 회원 수는 278명임.

순번 1번은 미국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의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링크를 통해 원천게시물에 접속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작곡 프로그램인 ‘◆◆◆◆◆◆◆◆◆◆◆◆◆◆◆◆’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됨.

순번 2번은 “○○○○○○○○ ○○.○.○ ○○ ○○○.○○○”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는 동시에, 파일 다운로드와 관련한 수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텍스트 파일은 ‘○○○○○○○○ ○○’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 ■■■■■ 링크와 설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프로그램을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관련 정보는 검토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음.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가 일관되게 가결하고 있는 링크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으로 파악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법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한 바 있음.

또한, 이에 앞서 하급심 판결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순번 2번의 경우 순번 1번과는 달리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나, 게시물 및 파일의 내용을 고려할 때 모든 절차를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순번 1번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원천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링크게시물로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과 2번,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 중인 ♠♠♠ 카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대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취미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유 중인 사안으로 파악됨. 순번 1번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함. 권리자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임.
- B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크랙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불법복제물임.
- A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권리자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시리얼 키를 입력하여 라이선스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부 권리자사는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사안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은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명백하게 불법복제물인 이상 부결을 하기에는 그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권리자사가 불법복제물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권리자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면 족하고, 현재로서는 합법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결해도 무방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 B 위원: 링크 행위를 방조 행위로 검토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판례에 근거한 표현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복제물로 보기에 충분한 점,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가 일관되게 가결하고 있는 링크 사안과 다르게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D, E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2번에 대해서 시정권고 가결하도록 하겠음. 부결 의견을 주신 위원님은 심의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한 국내 출판물의 전체 분량을 전송 중인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로,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3번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에 대해서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다음은 순번 4번부터 순번 806번까지 총 1,318건의 모니터링 안전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3개 정도 보여드리

겠음.

(영화 '킹 리차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9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해외 영화 '킹 리차드'임. 현재 370포인트에 2.2기가 분량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2년 3월 24일에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연 중인 영화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92번은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 중인 음악저작물임. 국내 드라마 OST 앨범 수록곡 중 10곡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08번은 웹하드에서 판매 중인 일본 만화 출판물 '카드캡터 사쿠라 클리어카드'임. 해당 저작물은 국내에서 단행본 출판물 및 웹 형식으로 제공 중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총 1,318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80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07번은 순번 806번과 동일한 게시물로, 심의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중복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807번은 중복 안건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7619호~17620호(순번 1번~2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 제2022-18425호(순번 807번)는 부결, 그 외{안건번호 제 2022-17621~18424호(순번 3번~80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 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1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